
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윤한홍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44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20.

발 의 자 : 윤한홍 · 박덕흠 · 김상훈
이종욱 · 권성동 · 강명구
박상웅 · 박수영 · 김도읍
엄태영 · 김대식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독립유공자 등록 신청 주체를 독립유공자 본인과 배우자, 자녀, 손자녀, 광복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며느리까지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기록·예우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책무임에도, 현행법은 등록 신청 주체를 당사자를 포함해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어, 사실상 독립유공자 발굴을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임. 이로 인해 국가에 헌신하였음에도 신청할 유족·가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묻히는 사례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.

현행법상 등록 신청 주체가 없는 경우,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후적·보

충적 수단에 그쳐, 체계적인 유공자 발굴 제도로서의 기능에는 한계가 있음.

이에 등록 신청 주체가 없어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「민법」 제777조에 따른 친족도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, 유공자 발굴의 제도적 경로를 확대하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신속한 기록 및 예우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6조).
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없어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아닌 독립유공자의 친족(「민법」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)이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등록 및 결정) ① (생 략)	제6조(등록 및 결정) ①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없어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 가 아닌 독립유공자의 친족 (「민법」 제777조제1호 및 제 2호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)이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.</u>
<u>② ~ ④</u> (생 략)	<u>③ ~ ⑤</u> (현행 제2항부터 제4 항까지와 같음)